

##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<b>제4조의2 (청약의 철회)</b></p> <p>① 일반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</p>	<p><b>제4조의2 (청약의 철회)</b></p> <p>① <u>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</u> ----- ----- <u>바에 따릅니다.</u></p> <p>② ----- <u>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</u> ----- ----- <u>채무자의</u> -----.</p>	자구수정
<p><b>제4조의3 (위법계약 해지)</b></p> <p>① 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	<p><b>제4조의3 (위법계약 해지)</b></p> <p>① <u>채무자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	자구수정
<p><b>제6조 (담보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,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. “채무자 등”은 채무자, 설정자,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.</p>	<p><b>제6조 (담보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근거법 변경에 따른 수정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채무자에게 제6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당해 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을 준수하였고 채무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(제2항제5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)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 방식을 ----- ----- -----</p>	
<p><b>제7조 (연대보증인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개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. ~ 나. (생략)</p> <p>2.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. ~ 마. (생략)</p> <p>③ 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.</p>	<p><b>제7조 (연대보증인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----- -----.</p> <p>&lt; 삭제 &gt;</p> <p>&lt; 삭제 &gt;</p> <p>&lt; 삭제 &gt;</p>	<p>금소법 시행에 따른 연대보증인 성립 가능 요건 반영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④ ~ ⑧ (생략)	③ ~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)	조문번호 조정
<b>제8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</b> ①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<u>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,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</u>	<b>제8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</b> ①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,</u> ----- ----- -----	근거법률 개정에 따른 수정
<b>제10조의2(할부거래법상 철회·항변권 안내)</b> 금융회사는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·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(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)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철회·항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<u>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에 따라</u>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.	<b>제10조의2(할부거래법상 철회·항변권 안내)</b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----- ----- -----	근거법률 개정에 따른 수정
<b>제13조 (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)</b>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,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,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,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<u>채권과를</u>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,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.	<b>제13조 (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)</b>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채권을</u> ----- ----- -----	자구 수정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9조 (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	<p>제19조 (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<u>다만,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.</u></p>	<p>불공정약관 변경명령에 따른 약관변경</p>
<p>제25조 (약관·부속약관 변경)</p> <p>① <u>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,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, 이를 알려야 합니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5조 (약관·부속약관 변경)</p> <p>① <u>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변경약관을 게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된 직후 게시합니다.</u></p> <p><u>1. 법령 개정, 제도 개선, 약관 변경권고(명령)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</u></p> <p><u>2. 약관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</u></p> <p><u>3.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</u></p> <p><u>4.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</u></p>	<p>약관 변경 관련 통지기한 및 방법 변경 (예외신설)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② 금융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채무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&lt; 신 설 &gt;</p>	<p><u>② 제1항의 약관변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,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(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직후) 서면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<u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u></p>	